



##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공고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절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7.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 1 선발분야 및 인원, 담당업무 등

선발분야(모집구분)	선발인원	주요 담당업무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실무수습)	2명	법률사무종사 실무수습 과정 ※ 민사소송·행정소송·헌법재판, 법률 질의 검토 및 의견서 회신, 연구용역 과제 수행 등의 각 업무에 대한 지원·보조

### 2 근무조건, 계약기간 등

- 근무조건(근무형태) : 기간제 계약직(법률사무종사 실무수습)
- 계약기간(근무기간) : 2026. 6. 23. ~ 2026. 12. 22. (6개월)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휴게1시간), 1주 40시간
- 근무장소 : 정부법무공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 월 보수기준액 : 월2,200,000원 (세전)

### 3 지원자격(응시자격) 등

#### ○ 지원자격(응시자격) 요건 및 선발 근거 규정

지원자격(응시자격) 요건	선발 근거 규정 (근로관계 근거)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아래 응시 결격사유 미해당자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

#### ○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공공기관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관계법령(예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

### 4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부여

#### ○ 공단 규범, 관련 법률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에게 해당 가산점 부여

- ※ 가산점 부여에 따른 선발인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규정 상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5 전형방법

#### ○ 1차 : 서류전형(NCS기반 블라인드)

- 합격자 결정기준 :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성적 고득점자 순
- 서류심사위원이 최종선발예정인원 2명의 4배수(8명)를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동순위자) 처리기준

- 1)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인사사무처리규정 제 18조 제3항, 제20조 제5항 등 참조)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함

- 2) 취업지원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지원자가 최종선발예정인원의 4배수(8명) 이내인 경우 응시자격 충족 시 전원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2차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블라인드 면접)

- NCS기반 자기소개서, 면접전형자료 등을 기반으로 한 면접을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아래 평정요소에 의하여 평가

평 가 항 목
① 법률사무종사 실무수습 변호사로서의 정신자세 (20)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일반상식 (20)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④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20)
⑤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0)

- 합격예정인원 :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면접전형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 결정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아주미흡(E)[0~4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동점자 처리 : 면접위원들이 투표하여 최고 득표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동순위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인사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4항 등)

## 6 전형일정 등

### ○ 전형일정 등 개요

구 분	일 정	비 고
선발(채용)공고	'26. 4. 27.(월)~'26. 5. 12.(화)	
응시원서(지원서) 접수	'26. 4. 27.(월) 공고 시 ~ '26. 5. 12.(화) 15:00까지	-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 우편, 전자메일을 통한 접수불가 - 아래 제출서류 참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5. 27.(수)	- 공단 홈페이지 공고 -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8명)
서류전형 합격자 사진파일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	'26. 5. 27.(수) 합격자 공고 시 ~ '26. 6. 1.(월) 15:00까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파일 및 자기소개서, 법학전문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등 제출 - 제출기간 엄수
면접시험	'26. 6. 8.(월)	- 응시자별 면접시간 개별통보
최종합격자 발표	'26. 6. 16.(화)	- 공단 홈페이지 공고 - 채용후보자등록 : 6. 19.(금) 12:00까지 (등록절차 별도안내)

### ○ 응시원서(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4. 27.(월) 공고 시 ~ 2026. 5. 12.(화) 15:00까지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kgls/>) 온라인 접수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방문, 우편, 전자메일(이메일)을 통한 접수 불가

- 응시원서(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마감 기간 내에도 수정 재제출이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신중하게 작성 후 제출 요망  
(임시저장 기능 활용가능, 접수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유선상담하지 아니함)
- 제출 마감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 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접수 기간 내 미리 응시원서(지원서) 작성 및 최종 제출 요망

## 제출 서류

-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위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작성 시 「**성별, 나이, 학교명, 가족관계(부모 직업 포함), 종교 등 선입견이 개입될 수 있는 사항**」이 드러날 경우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킹 등 블라인드 처리한 후 제출
- 블라인드 전형을 위해 응시원서(지원서) 접수 시에는 응시원서(지원서) 기재 요구자료 외 일체의 서류는 제출 불가하며, 응시원서(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외국어 발급 증명서 등 서류는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

### ① 응시원서(지원서) 1부 [채용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 포함)  
- 각 온라인 입력

### ②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 ③ 제15회 변호사시험성적확인 조회 자료

- ※ 주의 : 본 공고문 하단 붙임1「변호사시험 성적확인 조회결과 제출방법」참조
-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책서비스 > 시험정보] 메뉴에서 지원자 본인의 제15회 변호사시험 성적확인 조회 결과를 PDF로 저장
- 지원자 본인의 이름, 선택형·논술형·전문적법률분야의 각 취득 점수 및 총점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 ④ (이하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 동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

○ 근무개시일, 근무기간(계약기간) 등

- 근무개시일(예정) : 2026. 6. 23.(화)
- 근무기간(법률사무중사 계약기간) : 2026. 6. 23.(화) ~ 2026. 12. 22.(화)
- 최종합격 또는 선발된 후에라도 지원(응시)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단기 기간제 계약직 법률사무중사(실무수습) 변호사로 선발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거부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1. 금번 선발공고는 공단변호사로서의 정식채용을 전제하지 않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법률사무중사(실무수습) 변호사 선발 과정으로서,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법률사무중사(실무수습) 기간 동안 정부법무공단에서 단기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고 계약기간 종료(또는 중도해지)와 동시에 정부법무공단과의 근로계약 관계는 종료되며, 공단변호사로서의 임용(또는 전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합격자의 채용연기·유예 불가합니다.

## 7 유의사항

- 응시원서(지원서) 등 입사지원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증빙서류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한 사실, 시험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채용으로 취소된 사실 등이 적발될 경우 시험 무효, 합격취소·채용취소하며 임용이후라도 직권면직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5년간 응시자격 제한

※ 응시자 부정행위 등 신고 : 정부법무공단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

- 정부법무공단 인사팀 (전화번호 02-2182-0086, 02-2182-0082)
- 국민권익위원회

가)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나) 우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다) 팩스 : 044-200-7972

라) 직접방문

-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대표전화 02-6021-2115)

마)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 ▶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신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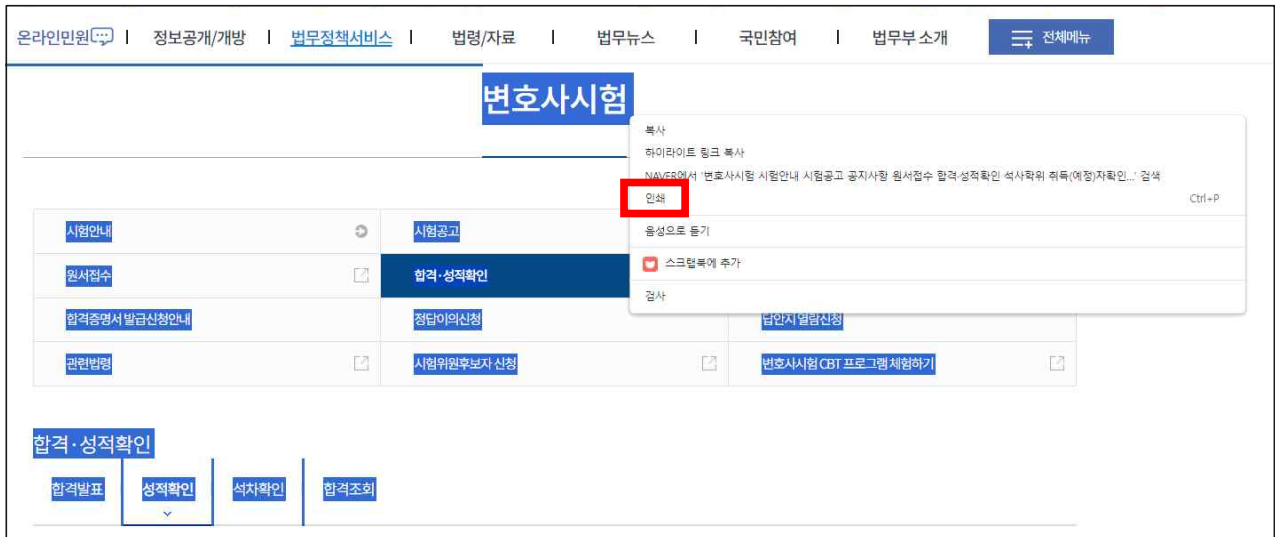
## 8 기타 안내사항

- 본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선발은 공단변호사로서의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공단변호사의 신규채용은 본 선발 과정과 다른 별도의 공고로 소정의 정식채용 절차를 거쳐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없는 내용은 공단 내부규정과 인사위원회의 결정 등에 따르며, 전형위원 및 응시자를 대상으로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서 접수결과 그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단은 법률사무종사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법률사무종사 확인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공단 이외의 법률사무종사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하였거나 연수를 받은 지원자의 경우, 실무수습과 연수기간 등을 모두 합산하여 총 6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공단에서 법률사무종사 변호사로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시자 서류 반환은 불합격 지원자 중 최종 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에서 오프라인으로 제출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 가능 (온라인 제출 파일 및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서류 반환 위한 개인정보요청 가능)
- 본 선발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 0617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12 하나빌딩 6층 정부법무공단 인사팀 (☎ : 02-2182-0086, 0082, 0084, 0085). 끝.

(붙임1)

# 변호사시험 성적확인 조회결과 제출방법

## 1. 해당 정보 드래그 → 마우스 우클릭 → 인쇄



## 2. PDF로 저장 ※브라우저에 따라 인쇄 팝업창이 다를 수 있음

